

『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순이 의원 외 6인

2. 제안이유

- 「식품위생법」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구미시 모범 업소 중 상수도 단독계량기 설치업소에만 지원되는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전체 모범 업소에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식품접객업소 간 형평성 확보 및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모범 업소중 1개의 계량기로 2개 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요금 감면이 제외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 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에 균등하게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지원코자 함(안 제41조제1항제5호)

4. 참고사항

- 「식품위생법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미시 모범업소 중 상수도 단독계량기 설치 업소에만 지원되는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전체 모범업소에 균등하게 지원 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식품접객업소 간의 형평성을 확보코자 하는 안으로서
- 주요 내용을 보면
 - 모범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2개 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요금 감면이 제외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좋은 식단체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에 균등하게 상수도 요금 감면혜택을 지원코자 함
-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상수도 사용량에 따른 차등지원에서 균등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모범업소 간의 민원 해소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며
- 업소 간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